

목차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4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1 호 6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7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8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 호 9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3 호 9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4 호 10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10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11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3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 19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20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 21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21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채권)..... 22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I)(채권)..... 23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4

프랭클린템플턴 내추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5
프랭클린템플턴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6
프랭클린템플턴 단기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7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8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9
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30
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31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아안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32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아안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33
프랭클린템플턴 오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34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36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37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8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9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40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46
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47
프랭클린템플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48
프랭클린템플턴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49
프랭클린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50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50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52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58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59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60
프랭클린템플턴 재형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2
프랭클린템플턴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62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63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	68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69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1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2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1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3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2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4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3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	73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74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74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채권 5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75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아시안 그로스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6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6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77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8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78
 프랭클린템플턴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79
 프랭클린템플턴 프런티어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80
 프랭클린템플턴 프런티어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81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법령 개정 반영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MENA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법령 개정 반영

	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1 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 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 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 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3 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법령 개정 반영

	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4 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5 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	------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u>(추가)</u></p>	<p><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p>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p>

	<p>5) 삭제 6) 삭제</p>		
제25조(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p>①~② (생략) ③ 각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구는 다음의 정함에 따른다. 1. 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2.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①~② (생략) ③ 각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구는 다음의 정함에 따른다. 1. 제 3 조 제 3 항 제 2 호, 3 호 및 4 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제 3 조 제 3 항 제 1 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p>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p>	<p>법령 개정 반영</p>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문서 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u>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	펀드 명 변경

<p>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5. (생략)</p> <p>6. (추가)</p> <p>(생략)</p> <p>④ (추가)</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5. (생략)</p> <p>6. 종류형</p> <p>(생략)</p>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p> <p>2. CLASS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p> <p>3. CLASS C-I 수익증권: 최초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p> <p>4. 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p>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p>
<p>제 9 조(수익권의 분할)</p>	<p>①생략</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①생략</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생략)</p> <p>⑤ <u>(추가)</u></p>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CLASS A 수익증권</p> <p>2. CLASS A-e 수익증권</p> <p>3. CLASS C-I 수익증권</p> <p>4. CLASS C-F 수익증권</p> <p>(생략)</p> <p>⑤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제 37 조(수익자총회)</p>	<p>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p> <p>④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p> <p>⑤ 수익자총회는 (...)</p> <p>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p> <p>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p> <p>⑧ 연기수익자총회의 (...)</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p> <p>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p> <p>⑥ 수익자총회는 (...)</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p>	
<p>제 39 조(보수)</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CLASS A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2. CLASS A-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3. CLASS C-I 수익증권</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10%</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u></p> <p><u>4.. CLASS C-F 수익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u></p>	
<p>제 40 조(판매수수료)</p>	<p>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u>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1 범위로 한다.</u></p> <p>③ (추가)</p>	<p>① 판매회사는 <u>CLASS A 수익증권과 CLASS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u>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u>CLASS A 수익증권과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u></p> <p><u>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6% 이내</u></p> <p>③ <u>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된다.</u></p>	
<p>제 41 조</p>	<p><u>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u></p>	<p>① <u>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u></p>	

<p>(환매수수료)</p>		<p>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CLASS A 수익증권]</p> <p>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p> <p>[CLASS A-e 수익증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30 일 이상 : 없음 <p>[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90 일 이상 : 없음 <p>③ 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추가)</u></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p>	

	(생략) <u>③(추가)</u>	<u>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u> (생략) <u>③ 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u> <u>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 관련비용</u>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 1 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법령 개정 반영

	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5조(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F)(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5조(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I)(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법령 개정 반영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내츨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 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 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 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 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단기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제25조(판매가격)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 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 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 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 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 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 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 권 가입자격 변경
제25조(판매가격)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 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 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 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에 모투자신 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 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 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 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에 모투자신 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모투자신탁 수익증 권 매수 청구일 변 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 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법령 개정 반영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법령 개정 반영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제25조(판매가격)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

	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p>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삭제</p> <p>6) 삭제</p>	<p>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㉞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㉞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p> <p>9. CLASS C-F 수익증권:</p>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p> <p>9. CLASS C-F 수익증권:</p>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삭제</p> <p>6) 삭제</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오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CLASS C-F 수익증

<p>류)</p>	<p>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p>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권 가입자격 변경</p>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u>(추가)</u></p>	<p><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u></p>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스트레티지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 권 가입자격 변경
제25조(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② (생략) ③ 각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 구는 다음의 정함에 따른다. 1. <u>프랭클린템플턴 베스트 국공채 증권 모투 자신탁(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u>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 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 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2.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u>	①~② (생략) ③ 각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 구는 다음의 정함에 따른다. 1. <u>제 3 조 제 3 항 제 2 호, 3 호 및 4 호의 모 투자신탁</u>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 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 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모투자 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2. <u>제 3 조 제 3 항 제 1 호의 모투자신탁</u> : 집 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	모투자신탁 수익증 권 매수 청구일 변 경

	(채권) 및 프랭클린템플턴 미국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u>(추가)</u></p>	<p><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p>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p>

	5) 삭제 6) 삭제		
제25조(판매가격)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6) 삭제		
제25조(판매가격)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문서 전반)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p>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5. (생략)</p> <p><u>6. (추가)</u></p> <p>(생략)</p> <p><u>④(추가)</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5. (생략)</p> <p><u>6. 종류형</u></p> <p>(생략)</p> <p><u>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u></p> <p><u>2. CLASS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u></p> <p><u>3. CLASS C-I 수익증권: 최초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u></p> <p><u>4. CLASS C-F 수익증권:</u></p> <p><u>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u></p> <p><u>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u></p> <p><u>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u></p> <p><u>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u></p>	
<p>제 9 조(수익권의 분할)</p>	<p>①생략</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①생략</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u>(추가)</u></p> <p>⑤ <u>(추가)</u></p>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CLASS A 수익증권</p> <p>2. CLASS A-e 수익증권</p> <p>3. CLASS C-I 수익증권</p> <p>4. CLASS C-F 수익증권</p> <p>(생략)</p> <p>⑤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제 37 조(수익자총회)</p>	<p>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p> <p>④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p> <p>⑤ 수익자총회는 (...)</p> <p>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p> <p>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p> <p>⑧ 연기수익자총회의 (...)</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p> <p>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p> <p>⑥ 수익자총회는 (...)</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p>	
<p>제 39 조(보수)</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CLASS A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p> <p>2. CLASS A-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p> <p>3. CLASS C-I 수익증권</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10%</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u></p> <p><u>4. CLASS C-F 수익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u></p>	
<p>제 40 조(판매수수료)</p>	<p>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1 범위로 한다.</p> <p>③(추가)</p>	<p>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과 CLASS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CLASS A 수익증권과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p> <p>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6% 이내</p> <p>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된다.</p>	

<p>제 41 조(환매수수료)</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 일 이상 : 없음</p> <p>(생략)</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CLASS A, CLASS A-e 수익증권]</p> <p>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 일 이상 : 없음</p> <p>[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p>1.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 일 이상 : 없음</p>	
<p>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추가)</p> <p>(생략)</p> <p>③ (추가)</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p> <p>(생략)</p> <p>③ 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 관련비용</p>	
<p>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p>	<p>법령 개정 반영</p>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유로피언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 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이스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 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 권 가입자격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 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제25조(판매가격)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법령 개정 반영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제25조(판매가격)</p>	<p>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①~② (생략) ③ 각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구는 다음의 정함에 따른다. 1. 제 3 조 제 3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모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제 3 조 제 3 항 제 1 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p>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p>	<p>법령 개정 반영</p>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문서 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u>	<u>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5. (생략)</p> <p><u>6. (추가)</u></p> <p>(생략)</p> <p><u>④ (추가)</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5. (생략)</p> <p><u>6. 종류형</u></p> <p>(생략)</p> <p><u>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u></p> <p><u>2. CLASS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u></p> <p><u>3. CLASS C-I 수익증권: 최초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u></p>	

		<p>4. 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p>제 9 조(수익권의 분할)</p>	<p>① 생략</p> <p>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① 생략</p> <p>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생략)</p> <p>⑤ (추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CLASS A 수익증권</p> <p>2. CLASS A-e 수익증권</p> <p>3. CLASS C-I 수익증권</p> <p>4. CLASS C-F 수익증권</p> <p>(생략)</p> <p>⑤ 제 1 항 각호의 수익증권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p>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5 조(판매가격)	<p>①~② (생략)</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①~② (생략)</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제 37 조(수익자총회)	<p>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p> <p>④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p> <p>⑤ 수익자총회는 (...)</p> <p>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p> <p>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p> <p>⑧ 연기수익자총회의 (...)</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p> <p>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p> <p>⑥ 수익자총회는 (...)</p> <p>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p>	
제 39 조(보수)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p>	

	<p>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 	<p>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CLASS A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2. CLASS A-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8. CLASS C-I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1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	---	--	--

		<p>9. CLASS C-F 수익증권</p> <p>가. <u>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u></p> <p>나. <u>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u></p> <p>다. <u>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u></p> <p>라.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u></p>	
<p>제 40 조(판매수수료)</p>	<p>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u>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1 범위로 한다.</u></p> <p>③(추가)</p>	<p>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과 CLASS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CLASS A 수익증권과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p> <p>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6% 이내</p> <p>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된다.</p>	
<p>제 41 조(환매수수료)</p>	<p><u>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u></p>	<p>① <u>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p>	

		<p>② <u>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p><u>[CLASS A 수익증권]</u></p> <p><u>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u></p> <p><u>[CLASS A-e 수익증권]</u></p> <p><u>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u></p> <p><u>2. 30 일 이상 : 없음</u></p> <p><u>[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u></p> <p><u>1.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u></p> <p><u>2. 90 일 이상 : 없음</u></p> <p>③ <u>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p>	
<p>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추가)</u></p> <p>(생략)</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u></p> <p>(생략)</p>	

	③ (추가)	③ 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 관련비용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 1 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5조(판매가격)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당일</u>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영업일의 다음영업일</u>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u>(추가)</u></p>	<p><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p>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F)(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제25조(판매기준 및 판매가격)</p>	<p>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 삭제</p>	<p>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②~③ (생략)</p>	<p>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및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p>

	<p>6) 삭제 ②~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p>9. 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p>5) 삭제</p> <p>6) 삭제</p>	<p>9. CLASS C-F 수익증권:</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p>	
제25조(판매가격)	<p>①~② (생략)</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①~② (생략)</p> <p>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시행한다.	
----------------	--	-------	--

프랭클린템플턴 재형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5조(판매가격)	①~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①~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법령 개정 반영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문서 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u>	<u>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5. (생략)</p> <p><u>6. (추가)</u></p> <p>(생략)</p> <p><u>④ (추가)</u></p>	<p>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5. (생략)</p> <p><u>6. 종류형</u></p> <p>(생략)</p> <p><u>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u></p> <p><u>2. CLASS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u></p> <p><u>3. CLASS C-I 수익증권: 최초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u></p>	

		<p>4. CLASS C-F 수익증권:</p> <p>1) <u>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u></p> <p>2) <u>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u></p> <p>3) <u>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u></p> <p>4) <u>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u></p>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p>①생략</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①생략</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생략)</p> <p>⑤ <u>(추가)</u></p>	<p>① 집합투자업자는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CLASS A 수익증권</p> <p>2. CLASS A-e 수익증권</p> <p>3. CLASS C-I 수익증권</p> <p>4. CLASS C-F 수익증권</p> <p>(생략)</p> <p>⑤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 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p>	

<p>및 공고)</p>	<p>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제 37 조(수익자총회)</p>	<p>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 ④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 ⑤ 수익자총회는 (...)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 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 ⑥ 수익자총회는 (...)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p>	
<p>제 39 조(보수)</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CLASS A 수익증권</p> <p>1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u>나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90%</u></p> <p><u>다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3%</u></p> <p><u>라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15%</u></p> <p><u>2. CLASS A-e 수익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5%</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3%</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15%</u></p> <p><u>3. CLASS C-I 수익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10%</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3%</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15%</u></p> <p><u>4. CLASS C-F 수익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3%</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15%</u></p>	
--	--	--	--

<p>제 40 조(판매수수료)</p>	<p>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u>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1 범위로 한다.</u></p> <p>③ <u>(추가)</u></p>	<p>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과 CLASS A-e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p> <p>② CLASS A 수익증권과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p> <p>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6% 이내</p> <p>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CLASS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비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범위를 적용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납입금액의 0.5% 이내로 인하된다.</p>	
<p>제 41 조(환매수수료)</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 일 이상 : 없음</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CLASS A, CLASS A-e 수익증권]</p> <p>1.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p> <p>2. 30 일 이상 : 없음</p> <p>[CLASS A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을 제외한 다른 수익증권]</p> <p>1.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90 일 이상 : 없음</p>	
<p>제 42 조(기타 운용비용)</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p>	<p>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p>	

등)	<p>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추가)</u></p> <p>(생략)</p> <p><u>③(추가)</u></p>	<p>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u></p> <p>(생략)</p> <p><u>③ 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u></p> <p><u>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 관련비용</u></p>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 1 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법령 개정 반영

	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친디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p>제25조(판매가격)</p>	<p>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① ~② (생략) ③ 각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구는 다음의 정함에 따른다. 1. 제 3 조 제 3 항 제 1 호의 모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제 3 조 제 3 항 제 2 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p>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p>	<p>(추가)</p>	<p>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p>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시행한다.	
----------------	--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2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법령 개정 반영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3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라이프 2045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UH)(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법령 개정 반영

	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	------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u>(추가)</u></p>	<p><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일부터 시행한다.</u></p>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채권 5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추가)</p>	<p><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p>	
---------------------------------------	-------------	---	--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아시안 그로스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추가)</p>	<p><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u></p>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p>	<p>법령 개정 반영</p>

	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퇴직연금 파워리서치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u>(추가)</u>	<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u>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p>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삭제</p> <p>6) 삭제</p>	<p>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㉞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㉞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프런티어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p> <p>9. CLASS C-F 수익증권:</p>	<p>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p> <p>9. CLASS C-F 수익증권:</p>	CLASS C-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5) 삭제</p> <p>6) 삭제</p>	<p>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p> <p>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p> <p>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p> <p>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㉗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㉗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법령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	(추가)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	

프랭클린템플턴 프런티어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CLASS C-F 수익증

<p>류)</p>	<p>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5) 삭제 6) 삭제</p>	<p>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9. CLASS C-F 수익증권: 1)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 억원 이상인 법인 4)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p>	<p>권 가입자격 변경</p>
<p>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u>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u>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u>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법령 개정 반영</p>
<p><부 칙> 제1조(변경계약의 시행일)</p>	<p><u>(추가)</u></p>	<p><u>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u></p>	